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-1329호

[ ] 통행의 금지·제한  
[○] 차량의 운행 제한 ] **공고**

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

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[ ] 통행의 금지·제한  
[○]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23일

서울특별시장

직인

도로의 종류	특별시도	노선명	강남순환로
제한의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총중량 10톤이상 화물차량</li> <li>○ 높이 4.0m 초과 차량</li> <li>○ 너비 2.5m 초과 차량</li> <li>○ 건설기계, 고압가스 및 폭발물 운반차량</li> </ul>	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점 : 광명시 소하동 673(소하JCT)</li> <li>○ 종점 : 과천시 주암동 88-2 (우면고가교램프)</li> <li>○ 주요 시설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악터널, 봉천터널, 서초터널, 호암대교, 선암교</li> </ul> </li> </ul>
기간	2016년 7월 3일부터 무기한		

이유

- 가.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총중량 10톤이상 화물차량의 운행 제한
- 나. 터널 및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

그 밖의 사항

- 가.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거나 재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자 또는 도로관리청의 회차, 분리 운송,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.
- 나. 이 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(☎2133-8073), 강남순환도로(주) (☎1522-361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서류: 위치도

# 차량의 운행제한 위치도

